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허중식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9963
----------	-------

발의연월일 : 2026. 7. 15.

발 의 자 : 허중식 · 채현일 · 윤준병
유동수 · 한민수 · 김동아
안호영 · 이광희 · 맹성규
용혜인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주민소환제도는 지방의원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이나, 주민소환을 청구하기 위한 서명요건이 높아 실제 활용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특히 지방의원이 정당의 공천을 받아 당선된 이후 임기 개시 직후 자진 탈당하거나 다른 정당으로 당적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유권자의 정당 선택을 사실상 무력화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

이에 임기 개시일로부터 30일 이내 자진 탈당한 경우에 한하여 주민소환 청구요건을 완화함으로써 주민이 보다 실효적으로 정치적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4항 및 제5항 신설 등).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6항 및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지역구 지방의회의원이 임기 개시일부터 30일 이내에 후보자등록 당시 소속 정당을 자진하여 탈당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민소환투표 청구에 필요한 서명인 수는 같은 항에서 정한 기준의 2분의 1로 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정당의 합당
2. 정당의 해산
3. 정당의 당명 변경
4. 본인의 의사에 의하지 아니한 제명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7조(주민소환투표의 청구) ① ~ ③ (생략) <u><신설></u>	제7조(주민소환투표의 청구)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u>지역구 지방의회의원이 임기 개시일부터 30일 이내에 후보자 등록 당시 소속 정당을 자진하 여 탈당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민소환투표 청구에 필요한 서명인 수는 같은 항에 서 정한 기준의 2분의 1로 한다.</u> ⑤ <u>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항을 적 용하지 아니한다.</u> 1. <u>정당의 합당</u> 2. <u>정당의 해산</u> 3. <u>정당의 당명 변경</u> 4. <u>본인의 의사에 의하지 아니 한 제명</u> 5. <u>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불가피한 사유</u> ⑥·⑦ (현행 제4항 및 제5항과 같음)
<u><신설></u>	
④·⑤ (생략)	